
2026년 워라벨+4.5프로젝트 참여 기업 모집

2026년 「워라벨+4.5프로젝트」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경기경영자총협회

1 모집 개요

- 근거법령: 고용노동부 고시 「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 제3조
- 신청기간: 2026.03.09.(월)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
- 지원대상: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
 - * 2026.1.1.(목) 이후 노사가 제도 도입에 합의하고, 실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에 한함
- 지원내용: 규모별·유형별로 노동자 1인당 월 20~60만원 지원,
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60~80만원 추가 지원
- 제출서류: 워라벨+4.5프로젝트 참여 신청서 등
 - * 상세 제출서류 아래 '4. 제출서류' 안내란 참고
- 신청방법: 이메일 접수
 - jsyichenje87@gyef.or.kr / 031-8014-5480 / 조수용 팀장
 - hdy7272@gyef.or.kr / 031-8014-5476 / 홍동욱 대리

2

지원내용

구분	규모별*	유형별 도입 지원**	신규채용 시 추가 지원
지원 수준	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***	(부분도입) 1인당 월20만원(1년) (전면도입) 1인당 월40만원(1년)	신규 채용인원 1인당 월60만원(1년)
	▲생명·안전 관련 업종 ▲장시간 노동 사업장 ▲교대제 개편 추진기업 ▲비수도권 기업	(부분도입) 1인당 월30만원(1년) (전면도입) 1인당 월50만원(1년)	
	20인 이상 50인 미만	(부분도입) 1인당 월30만원(1년) (전면도입) 1인당 월50만원(1년)	신규 채용인원 1인당 월80만원(1년)
	▲생명·안전 관련 업종 ▲장시간 노동 사업장 ▲교대제 개편 추진기업 ▲비수도권 기업	(부분도입) 1인당 월40만원(1년) (전면도입) 1인당 월60만원(1년)	
지원 한도	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	100명	노동시간 단축분에 비례해 한도 설정
	20인 이상 50인 미만	단축 대상 근로자 전체 지원	

* 규모별 우대업종

생명·안전업종	철도, 병원, 항공, 수도, 전기, 가스, 혈액 공급, 통신, 선박, 여객, 소방업무 등
장시간 노동	직전 3개 연도 내 「근로기준법」제53조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명령을 이행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(시정지시 명령 후 위반사항 없음)
교대제 개편 추진	직전 3개 연도 내에 '일터혁신 상생컨설팅',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에 참여해 교대제 개편을 이행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
비수도권	비수도권 등 우대지원 지역

** 유형

- 부분도입: 주 2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
- 전면도입: 주 2시간 이상 근로시간 단축

*** 우선지원 대상기업

-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
 - 산업별 기준: 제조업(500명 이하)
 - 광업·건설업·운수업·통신업 등(300명 이하)
 - 도매업·소매업·숙박업·음식점업·금융업·보험업(200명 이하)
 - 그 밖의 업종(100명 이하)
- 산업별 기준 외: 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 - 2.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

3

지원대상

○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

- 50인 이상의 기업(사업장)의 경우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
- ▲생명·안전 업종, ▲장시간 노동 사업장, ▲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도 참여 신청 가능 (단, 우대지원은 적용하지 않음)

지원요건(모두 충족)

- ① 노사가 임금 감소 없는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에 합의한 기업(사업장)
- ②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, 근로시간 단축 목표 시간, 근로시간 단축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사업장
- ③ 출근 및 퇴근 시간 등 적용 대상 근로자의 근무사항을 전자·기계적 방식 등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업(사업장)
- ④ 주4.5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후 주당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미만(부분도입) 또는 2시간 이상(전면도입) 감소할 수 있는 기업(사업장)

지원 제외 사업주

- ① 「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
- ②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 등 「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」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
- ③ 「근로기준법」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- ④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
- ⑤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%를 초과하는 사업주
- ⑥ 근로조건을 변경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후에 신청하는 사업주

지원 제외 근로자

- ① 사업주(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
- ②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
- ③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
- ④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
- 고용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중복신청 및 수혜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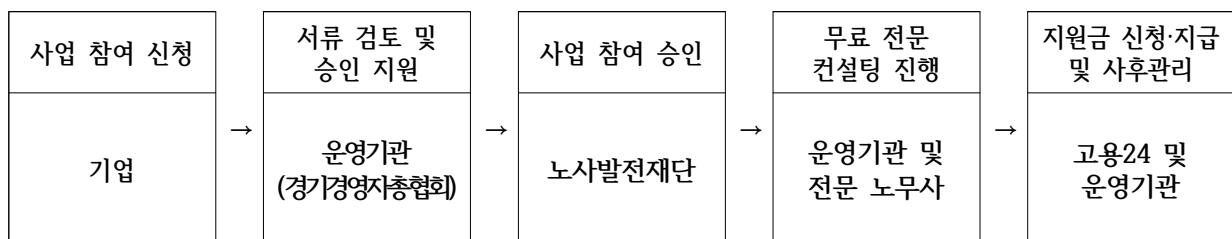
4

제출서류

필수	1. 워라벨+4.5프로젝트 참여 신청서 [양식1] - ▲ 사업 참여 신청서, ▲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계획서, ▲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적용 대상자 명부
	2. 노사 합의 확인 서류 [양식2] - ▲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, ▲ 근로자 대표 선출 확인서
	3. 첨부서류 - ▲ 사업자등록증, ▲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▲ 월별 임금대장 ▲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▲ 신청일 기준 전월 고용산재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▲ 우대사항 입증서류(해당 기업에 한함)
선택	○ 가점 사항 입증서류 - 정부(자치단체 포함)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·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, 고용부장관이 지정하는 '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', '대한민국 일·생활균형 우수기업(근무혁신 우수기업)' - 일터혁신 컨설팅 또는 일·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-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청·지청장과 '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' 또는 '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' 준수협약을 체결한 기업 - '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운영사업' 또는 '고용구조개선지원단 컨설팅' 진단참여 기업

5

진행절차



- 사업 신청 단계부터 최종 참여 승인까지 복잡한 서류 보완 등 적격성 확인 절차 운영기관 적극 자문을 통해 참여 승인을 극대화 지원
- 최종 승인 사업장 대상 전문 노무사 및 경영지도사의 근로시간 단축 모델 설계 및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위한 총 2회 무료 컨설팅 지원

6

신청 및 문의

- 경기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팀 조수용 팀장 / 홍동욱 대리
 - 이메일 : hdy7272@gyef.or.kr / jsychenje87@gyef.or.kr
 - 연락처 : 031-8014-5480 / 5476